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.

발 의 자 : 이종배 · 권영진 · 안철수
곽규택 · 서명옥 · 김기웅
송석준 · 이소희 · 김태호
최은석 · 이만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·육아 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소상공인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,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특히 생애주기 중 임신·출산·육아 과정에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바,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도 소상공인의 임신·출산·육아에 따른 일·가정 양립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상공인의 임신·출산·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, 공공요금 감면,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,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

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 제2항 신설 등).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사용 지원
2. 임신·출산·육아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,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세무·노무 자문 등 영업재개 지원
3. 소상공인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
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제1항제17호의4 중 “출산”을 “임신·출산”으로, “양립을 위한”을 “양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8. <u>소상공인의 출산·육아 및 일·가정 양립의 지원</u></p> <p>9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사용 지원</u></p> <p>2. <u>임신·출산·육아로 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,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세무·노무 자문 등 영업재개</u></p>

<신 설>
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1. ~ 17의3. (생략)
- 17의4. 소상공인의 출산·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
- 17의5. ~ 25. (생략)
- ② ~ ⑤ (생략)

지원

3. 소상공인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

4.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-----
-----.

- 1. ~ 17의3. (현행과 같음)
- 17의4. -----임신·출산 -----
양립-----
- 17의5. ~ 25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